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C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2. W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C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2. W클래스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</p> <p>3. I클래스 수익증권 :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내국 법인</p>
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C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2. W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<신설>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C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2. W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3. I클래스 수익증권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</u>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p>	<p>제34조(이익분배)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<u>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</u>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</p>

<p>② (생략)</p>	<p>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0조(보수) ①~② 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2. (생략) <신설></p>	<p>제40조(보수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목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I클래스 수익증권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<u>연 1000분의 4.7</u>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<u>연 1000분의 0.3</u>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<u>연 1000분의 0.15</u>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<u>연 1000분의 0.15</u></p>
<p><신설></p>	<p>부칙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